

10 칼빈과 여성을 위한 유일한 공적 직분 : 프랑스 피난민들과 개혁주의 전통의 관점에서 살펴본 유모, 과부, 그리고 사회복지¹⁾



Jeannine E. Olson / Rhode Island College, 역사학
이신열 교수 역 / 고신대학교, 조직신학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여성에게는 단지 하나의 공적 직분만이 주어졌다고 인정하였는데 이 직분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네바 시에는 ‘과부’ 또는 ‘여집사’라는 직분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구제활동을 맡아서 집사·역할을 담당하는 여성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본 논문은 제네바 시로 이주했던 프랑스 피난민들 가운데 여성과 복지의 문제를 깊이 있게 고찰하는 연구에 집중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 니메(Nimes), 엠덴(Emden), 암스테르담(Amsterdam), 그리고 독일의 라인란드(Rhineland) 지역에 형성되었던 개혁교회들의 실제적인 예를 참고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알랭 뒤푸(Alain Dufour)가 제시하였던 자료들로서 아직 고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부르스 프

1) 본 논문은 제나인 올슨(Jeannine E. Olson, Rhode Island College)의 논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랑쉐즈(Bourse francale) 또는 프랑스기금의 원자료들을 활용할 것이다. 이 기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기금으로서 1540년대에 그 설립 과정에 칼빈이 관계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자료와 다른 자료들은 여성과 고아, 그리고 특히 어린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그리고 유모(wet nurses)와 양모(foster mothers)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집중한다.²⁾ 이 논문은 성경, 초대교회에서 실제로 행해졌던 것들, 그리고 복지와 관련된 그 당시 여성의 역할 모두가 칼빈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여성의 유일한 공적 직분으로 이해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고 제안한다.

이 논문은 다음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여성과 가난한 자의 구호활동에 대한 칼빈의 입장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확립하고, 둘째, 여성이 16세기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특히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였는지를 기술하고, 셋째, 이러한 활동들이 개혁주의 전통에서 어떤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1. 여성과 가난한 자에 대한 칼빈의 견해에 대한 성경적 근거

교회 내에서 여성의 역할에 대한 칼빈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이해하려는 역사학자들의 굉장한 노력에도 불구하고,³⁾ 칼빈은 여성에게 하나의 직분만이 주어질 수 있다고 인정하였으며 그 직분은 가난한 자를 돌

2) 제네바 시 문서보관국(Archives d'Etat of Geneva)에 소장된 가난한 프랑스 피난민들을 위한 기금의 원본 자료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 준 알랭 두푸르(Alain Dufour)와 이 연구를 위해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 미국 국립 인문학 연구기금(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과 로드아일랜드 대학의 교수연구위원회(the Faculty Research Committee of Rhode Island College)에 감사 드린다.

3) Jane Dempsey Douglass, *Women, Freedom, and Calvin*(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85), 106–107.

보는 것이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4권 3장("교회의 교사와 사역자, 그들의 선출과 직분")에서 명확하게 "여성은 어떤 공적 직분도 지닐 수 없으며 단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라고 밝힌다.⁴⁾ 16세기에 다른 직분을 여성에게 천거하기를 주저했던 그가 왜 이렇게 여성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공적 직분이라고 분명히 불렀는가?

칼빈이 여성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을 공적 직분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성경과 그 당시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상당한 전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여성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칼빈의 시대에도 여성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맡았지만, 이 경우에 칼빈이 생각했던 것이 단지 상상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다. 「기독교 강요」에 언급된 여성의 공적 직분에 관한 칼빈의 진술 이전에 나타난 것은 바로 로마서 12:8에 기초하여 집사직을 둘로 구분하는 유명한 분류이다.

칼빈이 집사직을 두 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첫째는 구호금을 배분하는 직무를 맡은 집사이며, 둘째는 가난한 자와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집사이다. 따라서 칼빈은 집사라는 칭호를 제네바 시의 구빈원(city hospital)을 관리하는 이사들(trustees)과 구빈원을 매일 돌보던 관리인에 해당하는 오스피탈러(hospitaller)에게도 사용하였다. 그는 또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다양한 피난민 공동체를 섬기는 목적으로 제네바에 설립된 다른 복지기금의 관리자들에게도 이 칭호를 사용하였다. 여성과 관련해서 칼빈은 비록 초대교회의 과부들에게 당대에 집사라는 명칭이 부여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일에 전념했던 이들을 두 번째 등급의 집사에 포함시켰다. 두 종류의 집사와 관련된 칼빈의 로마서 본문 주석을 놓고

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John T. McNeill, ed. and Ford Lewis Battles, trans., (Philadelphia : Westminster Press, 1960), vol., 2, 1061.

다양한 의견이 상존하지만 이에 대한 그의 진술을 먼저 직접 들어 보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겨졌다. 그러나 로마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언급된다：“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궁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롬 12:8). 바울이 교회의 공적 직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거기에는 서로 구별되는 두 가지 등급이 있었을 것이다. 내 판단이 틀리지 않는다면, 전자는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집사들을 지칭할 것이고, 후자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한 자들을 지칭할 것이다.⁵⁾

그리고 칼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바울이 디모데서(딤전 5:9-10)에서 언급하는 과부들도 이 종류에 속한다. 여성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일에 헌신하는 것 외에 어떤 공적 직분도 지닐 수 없다.

성경본문 자체를 살펴보게 되면 디모데전서에 언급된 모든 과부들이 기독교인은 아니었다. 디모데전서 5장의 본문은 이에 대하여 구체적이다. “교회의 과부들”로 언급된 과부들은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는 특별한 범주에 속하며 독특한 특징을 지닌 과부들이었다. 디모데전서 5:3~5과 9~10에 언급된 과부들은 연령이 60세가 넘은 과부들로서 한 번만 결혼했으며, 그들을 부양할 가족이 없으며, 주야로 기도하는 자들이었다. 디모데전서 5:9~10은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떨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5) Ibid.

디모데전서 5:3~5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참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라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디모데전서에서 묘사된 것과 같이 과부의 직분은 돌보아 줄 가족들이 없는 불쌍한 과부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들은 절망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초대교회의 이런 불쌍한 과부들은 교회의 후원을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다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

성경과 2차 자료들에는 이런 과부의 직분에 대해서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⁶⁾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여성의 직분으로 받아들이는 칼빈의 입장에 대한 선례들을 성경과 초대교회의 실천에서 확실하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칼빈은 무엇에 의해서 제네바에서 그의 시대에 가난한 자들과 관련된 여성의 실제적 역할을 뜻하는 교회의 여성 직분을 표명하게 되었는가?

2. 여성과 16세기 구호활동에 관하여

초대교회의 과부들에 관한 글들보다 칼빈의 제네바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여성들에 관하여 훨씬 적은 양의 책들이 집필되었다.

먼저 제네바라는 도시에 관해 살펴보자. 16세기 제네바는 파리(Paris)와 리옹(Lyon)과 같은 대도시는 아니었다. 제네바는 중간 정도 크기의

6) Bonnie Thurston, *The Widow: A Women's Ministry in the Early Church* (Minneapolis : Fortress Press, 1989); Jeannine E. Olson, *Deacons and Deaconesses through the Centuries*(S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5), 26-27, 31-32, 39-43, 54-57, 59-60, 74-75, 127, 171, 174.

도시로서 1만 명과 2만 명 사이의 인구를 지닌 프랑스의 경제적, 행정적, 그리고 문화적 중심지와 비슷한 도시였다. 칼빈과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여기에 거주하면서 프랑스, 네덜란드와 벨기에, 영국, 신세계, 그리고 전 세계로 확산된 개혁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제네바는 이제 이 연구의 국제적 중심지가 되었다. 따라서 제네바의 복지 프로그램은 다른 곳의 복지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쳤다. 제네바의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서는 베나드 레까제(Bernard Lescaze)와 미셸린 루이-꾸르부와지에(Michelline Louis-Courvoisier)가 집필한 다음의 책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 *Sauver l'ame, nourrir le corps : De l'Hopital general a l'Hospice general de Geneva, 1535-1985.*

이 부분은 칼빈 시대의 제네바의 상황, 특히 프랑스에서 온 피난민들의 상황에 집중한다. 칼빈은 구제 활동이 여성의 유일한 공적 직분이라 는 확인을 지니고 있었지만, 제네바에는 ‘과부’라는 공적 직분도 여집사 제도나 여자 집사들이 그 당시에 없었다는 사실에 놀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에는 집사의 기능을 담당하는 여자들이 있었으며 그 기능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었다. 만약 칼빈이 항상 그의 견해를 실천에 옮겼더라면 이들은 아마도 제네바에서 공적 직분을 지니게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일을 하였는가? 16세기 제네바에서 집사 역할, 초대교회 과부의 역할과 견줄만한 역할을 담당했던 이 여인들은 누구였는가? 칼빈의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여인들은 모든 연령층, 사회의 모든 계층에 속하였으며,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였으며, 또한 미혼이거나 결혼한 자들 모두를 포함하였다.

이들은 바느질을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옷을 제공했다. 이들은 병자들을 간호하였으며 불쌍한 유아들을 위해서 보모로서 봉사했다. 이들은 자기 집에서 여행자들과 피난민들을 돌보았으며 뜻밖의 일들을 담

당했다. 일부는 그들의 시간을 투자하여 헌신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유료로 봉사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금전과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부하였는데 이는 주로 구빈원, 그리고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영어, 또는 독일어권의 피난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기금과 같은 16세기 제네바의 수혜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 당시에 제네바의 구호 활동을 관리하는 행정관들은 전적으로 남성이었지만, 이들은 여성들의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이는 때로 집사라는 직함 없이 활동하였던 자신들의 부인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여성들 일부는 집사들과 결혼하였다. 예를 들면, 16세기 제네바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자들은 프랑스기금의 관리를 맡은 행정관-집사들의 부인들이었다. 이 프랑스기금은 공증된 문서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이 도시로 피난해 온 가난한 프랑스인들을 위한 기금” 또는 이러한 직책과 유사한 종류로 알려져 있다.⁷⁾

이 호칭이 암시하듯이, 프랑스기금(*Bourse francale*)은 종교적 피난민들을 위한 기금이었는데 이 피난민들은 주로 가톨릭 프랑스에서 개신교 제네바로 개종한 자들이었다. 이는 제네바로 흘러드는 피난민들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무거운 짐으로 제네바 시 복지시스템을 위협했다. 1545년 6월 15일, 제네바 시 운영위원회는 이들을 축출하기로 결정했다.⁸⁾ 이러한 위급한 시기에 칼빈은 다비드 뷔장통(David Busanton)이라는 제네바의 부유한 피난민의 임종 자리에 함께했다. 뷔장통은 이 자리에서 제네바, 스트拉斯부르크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7) 공증된 문서에 등장하는 프랑스기금에 대한 이렇게 긴 명칭에 관해서는 1587년 7월 7일에 작성된 장 부데(Jean Budé)의 유언을 참고하시오. Archives d'Etat de Genève(이후에 AEG로 표기함). 공증인(Not.) 장 조베농(Jean Jovenon), vol. 6, fol. 210.

8) “가난한 외국인들 : 새롭게 구성된 두 순찰대가 모든 가난한 외국인들을 리베(Rive) 지역으로 집결시켜서 각 사람에게 빵이라는 구호물자를 주도록 하고 더 이상 제네바로 돌아와서는 아니된다는 명령이 내려졌다.” 1545년 6월 15일, AEG, Registre du Conseil, vol. 40, 1545년 2월 8일-1546년 2월 7일, fol. 149.

유산을 회사했는데 이로 인해 국외로 추방된 사람들이 자신들 중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⁹⁾ 제네바의 복지제도에 대한 압박이 약화되자 피난민들이 거기에 체류할 수 있게 허락되었다. 피난민들의 숫자는 1550년대에 크게 증가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 가운데에 가난한 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 부유한 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들이 가난한 자들을 후원할 수 있었다. 다비드 뷔양통의 기부금은 제네바에 1549년에 피난민들을 위해 설립된 기금의 출발기금(seed money)으로 사용되었다. 프랑스기금의 현존하는 첫 회계장부는 1550년에 작성된 것이다.¹⁰⁾ 따라서 뷔양통의 기부금과 프랑스기금의 시작을 설명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공백이 존재한다. 그의 기부금은 프랑스기금이 시작되기 전에 목회자들의 자유로운 재량에 맡겨진 기금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아마 1540년대 후반에 피난민들을 돌아보는 책무가 목회자들로부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하였으므로 자체적 재원과 행정력을 갖춘 프랑스기금이라는 별도의 기구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와 유사한 재정적 제도들이 제네바에서 이탈리아어, 영어, 그리고 독일어를 사용하는 교회들 내에 가난한 이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졌다.¹¹⁾

9) CO 12, 98(존 칼빈이 빠에르 비레(Pierre Viret)에게 1545년 6월에 보낸 편지, Letter 656).

10) AEG, Archives hospitalières (이후에 Arch. hosp.로 표기), Kg 12, 1550년 9월 30일-1551년 9월.

11) Henry Heyer, *L'Église de Genève 1535-1909, esquisse historique de son organisation suivie de ses diverses constitutions, de la liste de ses pasteurs et professeurs et d'une table biographique*(Geneva : A. Jullien, 1909) ; reprint, (Nieuwkoop : B. De Graaf, 1974), 74 ; John Burn, *Livre des anglois à Genève*, London, no publisher, 1881, 12-13 ; "Extrait de l'Adressé présentée au Grand Conseil Constituant par la Direction et Diaconie de l'Église allemande réformée de Genève et de la Bourse allemande (Lue au Grand Conseil dans sa séance du 15 février 1847)." in *La Communauté réformée allemande de Genève et la Paroisse protestante de langue allemande de l'Église Nationale : Documents divers et notices historiques*, H. Fehr., ed. (Geneva : Gutenberg, 1917), 25-26.

이 논문은 이제 근세 초기 프랑스기금의 실제와, 특히 이 기금과 관련된 여성의 역할에 집중하고자 한다.

프랑스기금은 일련의 집사-행정관들(deacon-administrators)에 의해 운영되었는데 이 직책은 교회의 초기시절로 되돌아간다. 그 당시에 주교의 보조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책임을 맡았으며 교회의 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은 집사로 명명되었다. 제네바의 프랑스기금을 운영하였던 집사-행정관들은 이 직책에 선출되었으며 그들은 남성들이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비즈니스 업무에 능통한 자들로서 중산층이거나 부유한 남성들로서 과거의 서류들(a paper trail)을 남겼다. 제네바의 고문서 기록실에는 그들의 개인적 유서, 계약서, 그리고 회계문서들이 프랑스기금의 법적 문서들과 함께 남아 있다.

집사들은 가난한 자들의 가정을 방문하였으며 이 기금의 운영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이 기금의 법적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구호금과 음식을 분배하였으며, 그들의 부인들 또한 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기금을 운영하였던 집사-행정관들의 부인들은 16세기 회계장부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남편을 대신하거나 기부자들을 안내하는 일을 도우는 일을 맡았다.¹²⁾ 얼마 전에 사망한 빠에르 말도나데(Pierre Maldonnade)라는 집사-행정관의 부인은 남편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남긴 유산을 내어 놓기도 했다.¹³⁾ 남성 집사들의 일 가운데 어느 정도를 실제로 집에서 그들의 부인들이 담당하였는가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지만 여성들이 확실히 집사라는 직분 없이

12) "D'ung quidam logé chez Monsieur Maldonnade, 5 sols"(말도나데 씨 집에 머물렀던 어떤 사람으로부터, 5솔, 솔은 프랑스의 옛 화폐 단위로서 12 denier(동전)에 해당한다. denier는 영국의 penny에 상응한다). AEG, Arch. hosp., Kg 14, 1554년 3월, p. 1.

13) "Item receu du testament de Monsieur de Maldonnade par les mains de sa femme, 10 écus sol vallant 47 florins, 11 sols"(말도나데 씨의 유언에 따라 그의 부인에 의해 전달된 건, 47플로린, 11솔에 해당되는 10에쿠스 수). AEG, Arch. hosp., Kg 15, 1554년 8월, p. 1.

집사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프랑스기금의 집사-행정관들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자신들의 부인 외에 다른 여성들을 고용하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성들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노임을 받았기 때문이었으며 때로는 여성들이 공짜로 일했기 때문이었다.¹⁴⁾ 프랑스기금의 집사-행정관들에게 주어진 구호금은 분배하기에 제한적이었다. 그들은 가능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했으나 필요시에는 임금을 지불했다. 그들이 임금을 지불해야 했을 때, 집사들은 봉급을 지불하는 방식보다는 일의 양에 따라 보수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고용하기를 선호했다. 프랑스기금을 위해서 여성들이 맡았던 일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보수가 지불되었다.¹⁵⁾

물론 일의 양에 따라 보수를 지급 받는 방식에 따라 남자 또는 여자 모두가 고용될 수 있었다. 바느질은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 남자 재단사나 여자 재봉사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옷들을 바느질할 수 있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삽일을 할 수 있었으며 양자 모두 여행객들과 피난민들을 돌볼 수 있었다.

유아들에게 젖을 먹이는 유모의 일은 여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었다. 유아들을 위해 실균 처리된 분유가 등장하기 이전 시대에 젖먹이가 가능한 여자 대신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궁색한 것이었으며 이는 유아에게 거의 확실한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

이 여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어린이들이 성장한다 하더라도 돌봄을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이었다. 여자들은 보모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 초대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법 성장한 어린이들을 돌보는 여자들 중 대다수는 재정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과부들이었다.

14) 제네바의 프랑스기금에 여성들의 이름이 간혹 등장한다. Jeannine 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 Deacons and the Bourse française*(Toronto : Associated Univ. Press, 1989), 120-126.

15) Baltzar and Julienne, AEG, Arch. hosp., Hj 2, 1559년 11월, p. 2, 4.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은 흥미롭지만 여기에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근세 초기에 여자를 고용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경우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관심을 집중하고자 한다 : 불쌍한 어린이들, 고아들, 그리고 버려진 아기들을 돌보는 여성의 역할인데 이는 사실상 복지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우선 가장 어린 아기들, 또는 다른 사람이 모유를 먹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들에 관해서 살펴보자.

그 당시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집사-행정관들은 이론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젖먹이들을 위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다 : (1) 모유를 먹여야 할 아기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 (2) 생존해 있지만 모유를 제공할 수 없는 어머니의 경우, (3) 발견되었을 때 이미 버려진 아기들의 경우.

어떤 경우를 통해서 집사들의 돌봄을 받게 되었든 간에, 이 아기들의 필요는 즉각적이었다. 여기에서 프랑스기금의 집사들을 통해 이런 아기들이 돌봄을 받는 경우와 제네바의 시립 구빈원의 경우를 비교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시의 복지제도에 의해 제공된 돌봄과 프랑스기금에 의해 제공된 돌봄은 고아의 생애 전체와 관련해서는 서로 달랐다. 그러나 초기 단계에서는 아기가 모유를 필요로 한다는 차원에서 동일한 종류의 돌봄에 해당된다. 고아로 버려진 아기들을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과제는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할 여자, 즉 유모를 찾는 것이었다. 이 여자는 반드시 모유를 생성하는 여자여야 하는데, 이는 다음의 네 가지 경우를 의미했다 : 첫째, 지금 모유를 공급 받는 다른 아기를 지닌 여자, 둘째, 근래에 사망한 아기를 지닌 여자, 셋째, 근래에 또는 갑자기 이유식을 한 아기를 지닌 여자, 넷째, 다른 여자에게 자신의 아기를 양도한 여자.

이렇게 모유를 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또 기꺼이 이를 하기

원하는 여자들의 대다수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거기에 머물기를 원했거나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이 아기들 중 일부는 유모들의 집에서 유모들과 함께 지내도록 보내졌어야 함을 뜻한다.

부자들의 경우 유모를 고용한 후 입주하여 그들과 함께 살면서 아기들을 돌보는 것이 가능했다. 부자들의 집에 고용된 유모들 중 일부는 자기 아기들을 돌보는 것을 포기해야 했다. 이 경우는 자기 집에서 아기 하나를 더 돌보는 것보다 훨씬 엄청난 희생이었다.

칼빈이 살았던 시대에 제네바의 복지 제도는 고용된 유모들에게 서비스의 대가로 1개월 또는 이보다 약간 더 긴 기간에 15~20수(sous)를 지불하였다(역자 주 : 1수는 1/20프랑에 해당되므로 유모들이 한 달에 1프랑 정도의 월급을 받았다고 짐작할 수 있다).¹⁶⁾ 불행스럽게도 그 당시 회계장부는 유모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지속되었는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모의 봉급이 일당 또는 주급으로 지불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회계장부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더욱 정규적인 지불에 대해서 기록했었을 것이다.

이 유모들은 상당한 흥정에 임할 수 있었다. 자신이 담당했던 아기가 도중에 사망했지만 프랑스기금의 집사들과 합의했던 금액 전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던 유모가 적어도 한 명은 있었다. 비록 이 유모의 잘못에 의해 아기가 사망한 것이라고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녀는 아기가 사망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유모들은 그녀들이 양육해야 했던 어린이들을 돌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어린이들은 그 유모와 함께 수년간 함께 지내기도 했다. 그 당시에 상대적으로 높았던 사망률을 고려해 본다면 이러한 유모들

16) "A la nourrice de l'enfant que tenoit Mademoiselle Magny, 20 sols"(마니 부인이 돌보는 아기의 유모에게 20수), AEG, Arch. hosp., Hj 2, 1561년 11월, p. 1.

의 돌봄은 시에서 운영하는 고아 양육원보다 어린이들이 생존할 가능성은 더 높여 주었으며 더 건강한 인격 형성과 자존감을 제공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높았던 어린이 사망률은 다음 세기에 이르러 더욱 만연하게 되었으며 제네바 출신인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1778)는 자기 자녀들을 고아원에 버리기도 하였다. 근대 초기 복지제도 전문가인 브라이언 풀란(Brian Pullan)에 의하면 베려진 고아들을 전문적으로 보살피는 고아 양육원은 유럽에서 개신교 지역보다 로마가톨릭 지역에 더 두드러지게 분포되어 있었다.¹⁷⁾

근대 초기 유럽의 경우 고아들만 유모들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었으며 부자들만이 유모들을 고용한 것도 아니었다. 모든 사회 계층에 속한 여자들 가운데 '모유'를 제공할 수 없는 여자들이 있었다. 물론 이들 중 일부는 기난했다. 예를 들면, 아내가 아파서 자녀들을 돌볼 수 없게 된 한 남성에게 프랑스기금이 유모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가 적어도 한번은 있었다.¹⁸⁾

어린이의 삶에 있어서 유모가 필요한 단계가 수년 동안, 그리고 오늘 날 구미 문화에서 모유를 공급 받는 경우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었다. 16세기에 원래적 의미의 유모는 이유식 단계에 들어간 후에도 그 아이를 수년 동안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 기록들은 특정한 아기가 언제부터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는가를 알려 주지 않는다.

유모가 아기를 돌보는 원래적 단계가 끝난 후에 제네바 시의 복지제도가 이 고아에 대한 책임을 계속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고아들 가운데 상당수가 돌봄을 위해 도시의 복지 시스템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고아의 생애를 놓고 볼 때 이 시점에서 이 고아의 돌봄

17) Brian Pullan, *Orphans and Foundlings in Early Modern Europe*(n. p. : University of Readings, 1989), 5~7.

18) "A ung pauvre homme qui a sa femme mallade pour la nourrice qui allaiste son enfant, 15 sols"(병든 아내를 둔 남자에게 그의 아이를 돌보는 유모를 위하여 15수), AEG, Arch. hosp., Hj 2, 1562년 3월, p. 2.

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도시의 사회복지제도 또는 피난민 기금이라는 두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

이 시점에서 고아를 돌보는 것을 누가 책임지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된다. 그 차이는 도시 복지제도가 고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이 건물은 과거에 푸어 클라레(The Poor Clares) 수녀원이었는데 제네바의 종교개혁 시기에 푸어 클라레가 이웃 가톨릭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이 수녀원 건물을 시에 의해 압수당하면서 구빈원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¹⁹⁾

후대에 이르러 제네바는 별도의 고아원을 지니게 되었지만 16세기에는 시 복지제도가 구빈원에 고아들을 수용했는데 여기에는 병자들과 궁핍자들(the indigent) 또한 수용되어 있었다. 시 복지제도는 이 고아들에게 교사들을 제공하였으며 이들이 스스로 견습생이 되거나 취업할 나이가 될 때까지 양육했다. 시 복지제도는 이들의 견습료를 부담하였으며 여자들에게는 신부 지참금도 제공하였다. 고아가 독립하기 전에 사망했을 때에 시 복지제도는 장례비용을 지불하였다.

만약 고아가 프랑스기금에 의해 돌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유사한 경로가 채택되었을 것이지만, 프랑스기금은 16세기에 병원을 지니고 있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프랑스기금은 도심에 병원 건물을 보유하기에 이르렀다. 왜냐하면 1703년에 구빈원이 부르드-푸(Bourg-de-Four)라는 지역의 건물을 프랑스기금에 월세를 받지 않고 제공했기 때문이며 프랑스기금은 이 건물을 병원으로 개조했다.²⁰⁾ 고아들을 수용할 건물이 없었던 16세기 상황에서, 프랑스기금의 보호

19) 제네바의 구빈원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것. Robert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in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76, February 1971, 50–69.; Bernard Lescaze, *Sauver l'âme nourrir le corps : De l'Hôpital à l'Hospice général de Genève, 1535–1985*(Geneva : l'Hospice général, 1984).

20) Henri Grandjean, "La Bourse Française de Genève(1550–1849)," *Étrennes Genevoises*, Geneva, Édition Atar, 1927, 54–55.

를 받았던 이들은 양부모 집으로 보내졌으며 이 양부모집은 흔히 과부들의 집이었다.

프랑스기금의 회계장부를 살펴보면 과부들과 때로 양쪽 부모가 모두 있는 집에 보내진 어린이들을 위해서 구호금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¹⁾ 이것은 제네바에 국한되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었다. 티모시 펠러(Timothy Fehler)는 엠덴(Emden)의 피난민 개혁 공동체에서도 여성들이 고아들과 기아들의 양부모로 봉사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²²⁾ 제네바에는 여러 명의 어린이들을 양모로서 돌보았던 과부가 있었다. 그녀는 아마도 가난했으며 생계를 위한 다른 수단이 없었을 것이다. 복지 기금이 그들의 복지 대상자 명단에서 가난한 과부들을 뽑아서 고아들을 돌보게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곤궁한 과부에게 임금이 지불되는 직업, 음식 또는 주거지가 제공되었다면, 그녀는 복지기금의 추가적 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복지기금 수령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교회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했다는 초대교회의 이상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인가 받기를 바라고 집사들을 찾아왔던 가난한 과부들이 대신에 돌보아야 할 여러 명의 어린이들을 맡게 된 것은 일종의 조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과부(또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를 양부모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들을 불러일으켰다. 그 문제들 중 하나는 16세기의 높은 사망률이었다. 만약 양모로서 봉사하던 과부가 죽게 된다면, 그녀가 돌보았던 모든 자녀들은 다른 가정에 보내져야 했다. 또한 16세기에 죽음이란 흔한

21) 예를 들면 데니 길레(Denys Gillet)와 페에르 마르셀(Pierre Marcel)의 미망인들은 양보들이었다. AEG, Arch. hosp., Kq 2, fol. 3, 5, 7, 21, 31.

22) Timothy Fehler, *Poof Relief and Protestantism : The Evolution of Social Welfare in Sixteenth-Century Emden*(Aldershot : Ashgate Publishing, 1999), 195–196.

일이었기에 많은 자녀들이 여러 수양 가정을 거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미 사망한 프랑소와 보네보(Francois Bonnevault)의 딸 수잔느(Suzanne)는 자기 아버지의 사망 이후에 프랑스기금의 도움을 받았다. 그녀의 아버지인 프랑소와도 1570년 12월 23일부터 1579년 8월 21일 까지 거의 9년에 걸쳐 프랑스기금의 도움을 받았다. 그 후에 수잔 자신도 1579년 9월 1일부터 1588년 4월 30일까지 또 거의 9년 동안 도움을 받았다. 이 기간 동안에 수잔을 위해 두 명의 과부, 한 명의 남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부인과 구빈원에 구호금이 지불되었다. (프랑스기금은 때로 그들이 맡은 가난한 자들을 구빈원에 위탁하거나 집사-행정관들의 비용으로 구빈원의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했으며 그들은 그 대금을 구빈원에 지불했다.) 만약 수잔이 이 모든 구호금 수령 대상자들의 집에 머물렀다면, 이는 그녀가 9년이 못 되는 기간 동안에 다섯 곳의 거처를 삼았음을 뜻한다.²³⁾

양부모의 죽음만이 거주지의 제공을 중단해야 하는 이유가 아니었다. 양부모의 보호를 받는 자녀들 가운데 일부는 도주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엘로이 브와즈마르텔(Eloy Boisemartel)의 아들인 에스티앙(Estienne)은 1580년 1월 1일부터 7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머물렀던 샤를 아르디유(Charles Hardieu)의 집에서 도주하였다. 지원자의 기록 본문에는 왜 그가 도주하였는지 또는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간단히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앞서 언급된 에스티앙은 샤를 주인의 집에서 도주하였다.”²⁴⁾ 아마 그들이 몰랐을지도 모른다. 이 사례를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집사-행정관이 단지 과부만을 양부모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이 기록으로부터 샤를 아르디유가 결혼을 했는지 또는 어머니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여자가 집에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도 없다. 집사들은 양부모의 역할을 담당하려는 사람들이 누구이든 간에 그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프랑스기금의 집사-행정관들은 어린이들을 위해 일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예를 들면, 한 부모의 자녀인 고아 형제나 자매들을 함께 두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1583년 8월, 빼에르 마르셀(Pierre Marcel)의 미망인에게 들보아야 할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이들은 두 쌍의 형제자매들이었다. 이들 중의 한 명은 작고한 샤크 부르디에(Jacques Bourdier)의 아들인 엘레아자르(Eleazard)였으며 마리(Marie)는 그의 여동생이었다.²⁵⁾

함께 동일한 곳으로 보내진 형제나 자매들이 항상 함께 지내게 된 것은 아니었다. 결별의 이유는 형제나 자매 중 하나가 견습생이 되어 훈련을 제공하는 주인을 따라 멀리 떠나 살게 되는 것이었다. 소년과 마찬가지로 소녀들도 견습생이 되었다. 예를 들면, 프랑스기금의 집사들은 로레인(Lorraine) 출신의 앙트왕느 브레통(Anthoine Breton)의 딸인 마리(Marie)를 제네바인과 그 여동생의 견습생으로 2년간 보냈다. 1566년 9월 19일에 작성된 견습계약서에 의하면, 집사들은 견습 시에 20플로린을, 그리고 둘째 해가 시작될 때 10플로린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동의했다. 견습 기간 동안에 마리에게 음식과 주거지가 제공되었다.²⁶⁾

그러나 마리와 엘레아자르 부르디에(Marie and Eleazard Bourdier)라는 두 남매는 1580년 1월 1일부터 빼에르 마르셀의 미망인 집에 보내져서 함께 머무르게 되었다. 엘레아자르는 견습생이 되었지만, 그의 동생인 마리는 비록 견습을 받았지만 적어도 프랑스기금의 후원으로 견습

28) "Bourse Française : Repertoire des Assistés no. 2, 1580-1599," AEG, Arch. hosp., Kq 2, fol. 3.

24) "Ledit Estienne s'en est fuy de la maison dudit Me Charles," Ibid., fol. 25.

25) AEG, Arch. hosp., Kq 2, fol. 29 verso (이후에 "v"로 표기함.), 31.

26) AEG, Not. Jean Ragueau, vol. 8, 1566년 1월 1일-10월 15일, Fol. 473-474.

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다. 돌 다 뼈에르 마르셀의 미망인 집을 1584년 6월에 떠나게 되었는데 이때 이 미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마리는 1584년 6월 20일에 다른 여인의 집으로 갔으며 1585년 8월 4일에는 또 다른 여인인 두 베르게 부인(Madame du Berger)의 집으로 가서 1년 동안 머물렀다.²⁷⁾ 그녀의 오빠 엘레아자르가 뼈에르 마르셀의 미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어디로 갔는지에 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14개월 후인 1585년 8월 20일, 그는 제빵기술자인 도미니크 바르베(Dominique Barber)로부터 견습과정을 통과했다.²⁸⁾

이 고아들과 양자들에 관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을 제외하고는 회계장부는 약간의 문제들을 보여 준다. 누가 고아이며 누가 단순히 프랑스기금에 의해 후원을 받는 자녀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때로는 쉽지 않다. 예를 들면 결혼한 부부와 여러 명의 자녀를 둔 가정이 양자를 기르는 경우, 모든 자녀들이 모두 양자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16세기 프랑스기금의 집사-행정관들은 그들의 회계 방식에 있어서 어린이들을 고아로 분류하는 것보다 자급된 금액을 기록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성(last names)을 지니고 있다면 이 자녀들이 그들의 친부모와 살고 있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서로 다른 성을 지니고 있다면, 자녀들이 양자인가를 결정하는 데 때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6세기 제네바의 많은 여성들은 결혼할 때 그녀들의 부친의 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과부들이 자신의 친자녀를 돌보고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의 자녀를 돌보고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힘들다.

또한 프랑스기금은 때로는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재혼하더라도 그 자녀를 계속 후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여자가 첫 결혼에서 낳은

자녀를 재정적으로 돌볼 수 없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자녀들의 어머니가 재혼한 후에도 그 자녀들을 계속 후원하는 정책은 진보적이지만 양자들을 식별하는 작업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한다.

16세기의 자녀를 돌보는 것은 그 자녀가 고아이든 또는 단순히 궁핍자의 적자이든 상관없이 원하지 않는 부수적인 결과를 동반할 수 있었다. 프랑스기금의 집사들은 그들이 후원하였던 어린이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예를 들면, 집사들은 장(Jean)이라는 소년과 한 소녀가 집을 떠나 견습생활을 하게 되기를 원하고, 이 자녀들의 어머니 알렉스(Aelx)는 뼈에르 헤르망(Pierre Herman)의 미망인인데 자녀들의 견습생활을 원하지 않는다. 그녀가 양모인가 또는 적법한 어머니인가에 관한 사실은 그녀가 복지제도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 집사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을 지니고 있었고 이 어머니가 지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회계장부는 그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후에 소년은 견습소로 보내겠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어머니는 집사들보다 소년의 마음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어머니 또는 양모는 후원을 계속해서 받도록 집사들의 협력을 받았다.²⁹⁾

결론적으로 종교개혁 당시 제네바의 양부모와 양자에 대해서 사회복지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으며 또 무엇을 알지 못하는가? 양부모 가정이 있었으며 양부모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들의 양자들이 장성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양육의 과제를 포기하였던 과부라는 사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다른 양부모 가정 또는 일련의 다른 가정들로 보내져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또한 이 자녀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양부모 가정으로부터 도주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프랑스기

27) AEG, Arch. hosp., Kq 2, fol. 31.

28) Ibid., fol. 29v.

29) Ibid., fol. 83.

금의 집사들이 형제들이나 자매들을 함께 양부모 가정에 보내기로 시도하였으며, 또한 그들이 후원하는 어린이들의 장래를 조정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16세기에 얼마나 많은 양자 또는 양부모 가정이 있었는가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있었는가를 알지 못한다. 또한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양모에게 주어진 금액이 전적으로 자녀들의 후원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는지 또는 그중의 일부는 자녀들을 돌보는 대가로 주어진 배상(reimbursement)이었는지 알지 못한다. 만약 그 금액의 일부가 양모를 위해 주어진 것이라면, 그 금액이 어떤 비율로 그녀 자신과 자녀들에게 분배되었는가를 알지 못한다. 프랑스기금의 회계장부에는 이 금액이 전적으로 자녀들을 위한 배상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에 스스로를 현신하는 것 외에 어떤 공적 직분도 지닐 수 없다.”는 「기독교 강요」에 나타난 칼빈의 주장을 되새기도록 만든다. 칼빈 당시의 제네바에서 여성은 양모로서 담당했던 뚜렷한 역할을 염두에 두고 살펴볼 때, 칼빈이 이를 여성을 위한 유일한 공적 직분으로 언급하였던 것은 놀랄 만한 것이 아니다. 만약 제네바 시민들이 여성을 위한 집사직과 관련된 직분을 제정하였더라면, 아마도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이를 ‘과부’의 직분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그러나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던 여성들을 위한 직분을 제정하고 이를 과부들을 위한 직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일했던 많은 다른 여성들을 제외시키는 셈이 되고 말았을 것이다. 제네바에서 가난한 자들과 더불어 일했던 모든 여성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제네바인들은 과부의 직분을 60세가 넘은 자녀를 지닌 어머니이자 휩절한 과부로서 1회만 결혼했던 자에게로 한정하는 디모데전서 5:3~5과 9~10에 언급된 성경적 제약을 아무 거리낌 없이 무시해야만 했을 것이

다. 양모들(이들 중 일부는 과부였을 것이다.)은 확실히 연령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과부의 직분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초대교회의 과부라는 직분에 대한 대안적 직분은 집사직과 여집사직이었다. 로마서 16:1~2에 나타난 빠베(Phoebe)는 바울에 의해 집사 또는 여집사로 불렸는데 이 명칭이 디아코노스(diakonos)를 어떻게 번역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이 용어를 달리 번역한다 : “겐그리아에 있는 교회의 집사(여집사)인 우리 자매 빠베는……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조력자였다.” 2세기와 3세기에 이르러 로마제국의 동쪽에는 여집사로 섬기는 여성들이 있었는데 이는 로마제국 서쪽의 과부와 비견되었다. 동쪽의 여집사는 서쪽의 과부와 많은 측면에서 동일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여집사들이 반드시 과부여야 하거나 60세 이상일 필요는 없었다.

3. 개혁주의 전통에 있어서의 국제적 영향력

제네바에 집사직, 여집사직 또는 과부의 직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16세기에 과부직과 여집사직 또는 여성 집사의 결여는 유럽으로 퍼져 나가는 다른 개혁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의 예외가 있었다. 이는 라인랜드 유역에 위치한 베젤(Wesel)의 개혁교회였다. 베젤 지역에서 1568년에 개최되었던 첫 번째 총회에서 여집사의 역할이 인정되었던 것이다. 베젤의 여집사는 (1) 병들거나 출산한 여성들을 돌아보는 간호사로서 섬기고(남성 집사들이 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섬김), (2) 옷을 구입하고 바느질하고, (3)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했다. 여집사들은 또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버려진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돌보는 책임을 지녔고, 피난민들을 집에서 돌보았으며, 고아들을 위한 도움도 제공하였다. 11년이 지난 1579년에 베젤은 여집사직을 확인했으며 총회에 이를 문의했다.

교회에서 특히 연약한 여성과 관련하여, 그것이 좋지 않았더라면 필요와 관습에 의해 여집사직이 재획립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철회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어떤 개혁주의 공동체에서도 이 직분이 사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³⁰⁾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여집사직은 적어도 네덜란드로 확산되었다. 이르게 잡으면 1566년, 그리고 늦게 잡아도 1583년경에는 암스테르담에 여집사직이 존재하였다.³¹⁾ 베젤의 여집사제도는 설립된 후 50년 이내에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여집사직이 디모데전서 5:3~16에 언급된 과부에 관한 초대교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는 반대 때문이었다. 즉, 여집사들 중 일부는 신약성경이 제시한 '공적' 과부에 대한 연령 제한인 60세 이하였으며 또한 그들 중 일부는 전혀 과부가 아니었으며 또한 일부는 심지어 집사의 아내였다. 베젤의 집사들은 여자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여집사들을 선택하도록 돋는 것을 발견했다.³²⁾

16세기인들 중 일부는 초대교회의 과부에 관한 기준과 여집사에 관한 기준을 뒤섞어 놓기도 했다. 이러한 현상은 16세기 베젤에서 여집사들에게 좋은 정조로 작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젤에서 여집사직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30) "Les frères de la ville de Wesel demandent s'il ne serait pas bon que, dans les communautés, là où le besoin et les moeurs le réclament, en particular à propos des femmes faibles, on rétablisse la charge des diaconesses ; parce que cette charge n'a encore été en usage dans auerune communauté réformée." E. Doumergue, *Jean Calvin : Les hommes et les choses de son temps*, vol. 5, *La pensée ecclésiastique et la pensée politique de Calvin*(Lausanne : George Bridel & Co., Editeurs, 1917), 306에서 인용함.

31) Charles H. Parker, *The Reformation of Community : Social Welfare and Calvinist Charity in Holland, 1572–1620*(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1998), 120.

32) Doumergue, *Jean Calvin*, vol. 5, *La pensée ecclésiastique et la pensée politique de Calvin*, 305–306.

1578년에 여집사 선출이 있은 후에 몇몇 남자들이 여집사의 선출이 과부에 관한 신약성경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불평하였다. 이러한 불만들에 대한 분명한 변호는 초대교회의 과부에 관한 기준과 여집사에 관한 기준은 서로 다른 것이며 여집사에게 동일한 연령 제한이 적용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베젤의 여집사직이 소멸된 이유는 부분적으로 반대자들이 초대교회가 설정한 직분의 기준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다. 연령을 이유로 베젤의 여집사직을 반대한다는 이슈는 교회사에 대한 무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교회에서 처음 보여 준 것은 아니었다.

비록 연령과 결혼 여부에 따라 초대교회에서의 과부와 집사에 관한 기준이 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젤의 장로들은 여집사직 이슈를 클레베(Kleve)의 시찰회에 최종적으로 호소했다. 이 시찰회는 1580년에 60세보다 4세 또는 5세 이하에 해당되는 자들이 여집사의 자격을 지녔다고 이슈를 시간의 문제로 삼았다. 이 결정은 과부에 대한 연령제한이 다양하게 이해되었던 초대교회의 실제적 시행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초대교회의 터툴리안(Tertullian)은 심지어 순결을 지킨 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들에게 여집사직을 주는 것에 반대했다!³³⁾ 3세기 초반에 비롯된 교회문서인 *Didascalia*는 시리아 지역 교회의 실천을 반영하고 있는데 과부의 최소 연령을 50세로 언급한다.³⁴⁾ 그

33) *On the Veining of Widows*, S. Thelwall, trans., in Alexander Roberts & James Donaldson, eds., *The Ante-Nicene Fathers, Translations of the Writings of the Fathers Down to A. D. 325*, vol. 4, *Fathers of the Third Century : Tertullian, Part Fourth ; Minneius Felix ; Commodian ; Origen, Parts First and Second*, American Reprint of the Edinburgh Edition(Edinburgh : Christian Literature Publishing Company, 1885) ; repr.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s, 1905), 33.

34) *Didascalia Apostolorum* 14, in Arthur Vööbus, trans. *The Didascalia Apostolorum in Syriac*, vol. 1 : *Chapter I-X. Corpus Scriptorum Christianorum Orientalium*, Editum Consilio Universitatis Catholicae

러나 16세기에 이르러 미들부르그(Middelburg)에서 개최된 국가적 총회에서 여집사직이 이슈로 등장하였다. 1581년에 열린 총회는 여집사직을 전적으로 금지하였다. 그러나 베젤의 감독회(consistory)는 계속해서 여집사를 임명했으며 이들을 처음에는 감독(overseer)으로 불렀다. 마지막 집사는 1609년에 선출되었다.

베젤에서 여집사직을 허락하는 동기가 1609년 이후에 줄어들게 된 이유는 불분명하고 성경적이지도 않다. 왜냐하면 그 다음 해에 베젤의 개혁주의적 구호 시스템이 베젤시의 그것과 합병되었기 때문이었다. 브랜든부르크의 지기문트(Sigismund of Brandenburg)는 과거에 루터란 도시였던 베젤에 개혁교회를 설립했다. 따라서 베젤에 살고 있던 개혁주의적 개신교도들은 도시의 복지제도와 교육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도시의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 개혁교회 내에서 여집사 사역의 필요성을 반감시켰을지도 모른다.

더 큰 그림을 살펴보면 개혁교회가 설립된 상황에서 여집사 또는 과부라는 호칭의 결여가 여성들이 교회에서 여집사나 과부의 사역을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필연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은 제네바에서뿐만 아니라 개혁교회가 퍼져 나갔던 많은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했다. 니메(Nîmes) 개혁교회의 감독회는 프랑스의 종교전쟁 시기에 도시로 몰려드는 가난한 피난민들을 위한 현금을 관리할 여성들을 임명했다. 17세기에 이르러 slap의 감독회는 매주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할 여성들의 명단을 작성했다.³⁵⁾ 암스테르담에서는 여성들이 시립 고아원의 부엌을 총괄했으며 통치자(regents)로서 소녀들에게 청소, 요리, 재봉, 뜨개질, 그리고 레이스 수놓기라는 가정적 기술을 지니도록 교육했다.³⁶⁾

Americanae et Universitatis Catholicae Lovaniensis 402. Scriptores Syri, 171(Louvain : Secrétariat du Corpus SCO, 1979).

35) Raymond Mentzer, "Organizational Endeavour and Charitable Impulse in Sixteenth Century France : The Care of Protestant Nîmes," *French History*, vol. 5, no. 1, March 1991, 14–15.

록 교육했다.³⁶⁾

초기 과부와 여집사의 역할은 만약 호칭과 '직분'이 문제가 되지 않았더라면, 개혁교회에 흡수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가난한 자들, 특히 가난한 자들의 자녀에 대한 여성의 지속적 역할에 대한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었다.³⁷⁾

19세기에 이르러 집사직 직분을 위해 봉사하는 여성을 위한 공식적 호칭이 더욱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1830년대에 독일 라인 강 유역의 카이저베르트(Kaiserwerth)라는 작은 복음주의 교회의 목사인 테오도르 플리트너(Theodore Fliedner)가 여집사직을 부활시켰다. 이 여집사직은 간호사, 교사, 그리고 목회 사역자로서 자신을 봉사에 헌신하였던 미혼의 개신교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³⁸⁾ 여집사 운동은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제네바에서의 여집사는 일부 개신교 교회에서 '교구 여집사'(diaconesses de paroisse)로 연상되기에 이르렀다.³⁹⁾ 1980년대까지 양리에트(Henriette) 수녀 집사는 생 빼에르 푸스테리(Saint-Pierre-Fusterie) 교회를 섬겼

36) Anne McCants, *Civic Charity in a Golden Age : Orphan Care in Early Modern Amsterdam*, Urbana, Univ. of Illinois Press, 1997, 41, 82–83.

37)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반 제네바의 가난과 가난한 자들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 다음을 참고할 것. Anne-Marie Piuz, "De la pauvreté et des pauvres," in *Vivre à Genève autour de 1600*, vol. 1. *La vie de tous les jours*, Liliane Mottu-Weber, Anne-Marie Piuz, and Bernard Lescaze, ed. (Geneva : Édition Slatkine, 2002), 229–247. 이 시대의 경제적, 정치적, 지적 상황에 대한 더 넓은 관점에서의 고찰을 위해서 다음을 참고할 것. vol. 2, *La vie tous les jours : Ordres et désordres*, 2006(Geneva : Éditions Slatkine, 2006).

38) Jeannine E. Olson, *One Ministry, Many Roles : Deacons and Deaconness through the Centuries*(St. Louis : Concordia Publishing House, 1992), 201–202.

39) Charles Chenevière, *L'Eglise de Genève, 1909–1959 : Esquisse historique de son organisation suivie des diverses modifications de sa constitution, de la liste de ses pasteurs et professeurs, et d'une table biographique*(Geneva : Labor et Fides, 1959), 8.

다. 수년 동안 세인트 빼에르의 홈(Home Saint Pierre)은 여집사와 여성들을 수용하였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독일어권 스위스 출신이었다. 1993년까지 엘리자베스 본든만(Elizabeth Bondenmann)이라는 존경 받던 여집사는 주민 감독관(resident supervisor)으로 섬겼다. 오늘날 세인트 빼에르의 홈은 전 세계의 여성들을 환대하고 있다.

제네바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에 관해서는 다음을 언급하고자 한다. 마르셀르 바르(Marcelle Bard)는 이 교회의 첫 여성 목회자로 1929년 12월 19일에 부름을 받았다. 오늘날 제네바 교회에는 남성 및 여성 집사들이 있다.⁴⁰⁾ 어떤 사람들은 여성 집사와 관련해서 적어도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칼빈의 생각이 유일한 공적 여성 직분을 통해 열매를 맺었다고 주장한다.

40) Ibid., 98.